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5,363,220	15,160,897
일반회계	455,008,941	13,650,268
특별회계	50,354,279	1,510,628
공기업특별회계	48,159,009	1,444,7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563,450	676,90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595,559	767,867
기타특별회계	2,195,270	65,858
지하수특별회계	429,630	12,889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343,920	40,318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	120,279	3,608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301,441	9,04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37,81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